

불법경쟁 및 영업상의 비밀법

제1조 이 법은 「2000년 불법경쟁 및 영업상의 비밀법」이라 하며, 관보에 게재한 일자부터 30일 후 시행한다.

제2조 (가) 산업 또는 상업부문에서 합법적인 행위에 반하는 모든 경쟁은 불법경쟁행위로 보며, 이는 특히 다음과 같다.

(1) 경쟁업체와 그 상품 또는 산업 또는 상업활동에 혼란을 유발할 수 있는 활동

(2) 영업에 대한 허위주장으로 영업소, 상품, 산업 및 상업활동에 대한 신뢰를 잃을 수 있는 행위

(3) 상품의 특성 또는 제조방식 또는 수량 또는 유효기간에 관련하여 대중에게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행위

(4) 상품의 외관 또는 공급방식을 이용하여 대중에게 상품의 가격 또는 계산방식에 대한 혼란을 유발시키거나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

(나) 불법경쟁이 요르단 내 사용 중이며, 등록되거나 등록되지 아니한 상표와 관련되어 대중에게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경우 이 조의 (가)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 서비스에 대하여도 이 조의 (가)와 (나)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가) 모든 관계인은 모든 불법경쟁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관계인은 불법경쟁에 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이 소송이 심리 중에 있는 경우 관할법원에 다음의 조치를 채택하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고 담보를 지급한다.

(1) 경쟁행위중지

(2) 관련물품과 상품에 대한 가압류

(3) 관련증거보관

(다)-(1) 관계인은 소송을 제기하기 전 피고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관할법원에 이 조의 (나)항에 명시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고 담보를 지급할 수 있다. 법원은 다음의 내용이 증명된 경우 신청서를 수락한다.

- 관계인에 대한 경쟁이 자행된 사실

- 경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발생 시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 경쟁에 대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사실

(2) 법원이 관계인의 신청서를 수락한 일자부터 8일 이내에 관계인이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채택한 모든 관련조치는 취소한다.

(3) 피고는 법원이 예비조치채택결정을 통지하거나 숙지시킨 일자부터 8일 이내에 이 결정에 대하여 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으며, 항소법원의 결정은 최종결정으로 간주한다.

(4) 원고가 예비조치채택을 신청할 권리가 없거나 이 항의 (2)에 명시한 기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이 증명된 경우 피고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라) 피고는 소송결과 원고가 기소권이 없음이 증명된 경우 발생한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마) 법원은 모든 경우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바) 법원은 불법경쟁의 대상인 상품과 불법경쟁행위에 사용된 물품과 장비에 대한 몰수를 결정할 수 있으며, 몰수물품에 대한 파기 또는 비상업적 목적의 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제4조 (가) 이 법을 적용하는데 있어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밀정보로 간주한다.

- (1)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아니하였거나 거래자 간 취득하기 힘든 정보
 - (2) 그 내용에 따라 상업적 가치가 있는 정보
 - (3) 정보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가 비밀유지를 요청한 정보
- (나) 공공질서 또는 도덕에 반하는 영업상의 비밀에 대하여는 이 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 (가) 영업상의 비밀을 공개, 이용, 보유할 수 있는 모든 자는 영업상의 비밀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로 본다.

- (나) 영업상의 비밀에 대한 권리자는 제3자가 이 법에 따라 보호 받는 영업상의 비밀을 악용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다.

제6조 (가) 제3자가 합법적인 영업행위에 반하여 영업상의 비밀을 취득하거나 이용하거나 유포한 행위는 영업상의 비밀을 악용하는 행위로 본다.

- (나) 이 조의 (가)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합법적인 영업행위를 위반한 행위로 본다.

- (1) 계약위반
- (2) 신용정보의 기밀파기 또는 기밀파기행위선동

(3) 합법적인 영업행위에 대한 위반행위라는 사실을 인지하거나 인지할 수 있음에도 제3자를 통하여 고의로 영업상의 비밀을 취득한 행위

(다) 선의로 영업상의 정보를 접한 행위는 합법적인 영업에 대한 위반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제7조 (가) 영업상의 비밀에 대한 권리자는 이 비밀을 악용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영업상의 비밀에 대한 권리자는 비밀악용행위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이 심리 중인 경우 법원에 다음의 각 호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신청서제출 시 법원이 지정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영업상의 비밀에 대한 악용행위중지

(2) 악용된 영업상의 비밀이 관련된 물품 또는 악용행위로 취득한 상품에 대한 가압류

(3) 관련장비보관

(다) 이 조에 명시한 경우가 아닌 다른 경우 영업상의 비밀을 악용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 법의 제3조에 명시한 규정과 조치를 적용한다.

제8조 관할공공기관은 비밀실험에 관한 보고서 또는 새 화학물질을 사용한

화학장비 및 농산품의 마케팅에 대한 동의를 위하여 기울인 노력의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의 각 호를 이행하여야 한다.

(가) 보고서가 불공정한 영업상의 이용에 악용되지 아니하도록 조치. 이는 해당 장비와 상품의 마케팅에 대한 허가를 취득하지 아니한 제3자의 위반행위를 저지하기 위함이다.

(나) 보고서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조치. 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공개가 가능하다.

(1) 대중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가 필요한 경우

(2) 관할공공기관이 보고서에 대한 영업상의 불법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

제9조 (가) 지적재산권에 관련한 허가계약서에서 경쟁을 제한하여 영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기술이전과 보급을 방해할 수 있는 모든 규정 또는 조건은 무효로 보며, 이는 특히 다음과 같다.

(1)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계약서에 명시한 기술에 대하여 업그레이드한 부분을 허가한 자에게만 이전할 수 있다.

(2) 허가 받은 자는 허가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행정적 또는 법적 분쟁을 제기할 수 없다.

(3)허가 받은 자는 허가계약서에 모든 권리를 포함시켜야 한다.

(나) 이 조의 (가)항에 명시한 지적재산권은 특히 다음과 같다.

-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 상표
- 지리적 표시
- 산업도안
- 특허
- 완성된 건물의 설계도
- 영업상의 비밀
- 새로운 식물종

제10조 내각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규칙을 공포한다.